

문화재 행정의 발전방향

金 鐘 焱(혁)

(文 化 財 企 劃 官)

목 차

I.머릿말	2.문화재 예산
II.문화재 행정환경의 변화	3.문화재 정책
III.문화재 행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IV.맺음말
1.문화재 조직	

I.머 릿 말

문화재는 역사문화를 이해하는데 없어서는 안될 문화적 자산이며, 나아가 문화를 향상시키고 발전시키는 기초가 된다. 우리는 이러한 문화재를 어떻게 잘 보존하여 후손에 전승하고, 어떻게 활용하여 문화와 역사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 정립과 민족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려 인류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화재관리 행정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문화재관리 행정이란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전승과 활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제반 작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문화재관리 행정은 매우 광범위하여 ‘문화재에 대한 모든 것’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먼저 우리나라의 문화재관리 행정의 성장과정을 살펴본다.

과거 일제의 강점으로부터 광복을 맞이하였으나 정상적인 문화재보존의 여건이 조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문화재관리국의 전신인 미군정 관할의 「구왕정사무청」(1955년 「구황실재산사무총국」으로 개편)이 1945년 발족되었고, 문화재관리 행정의 중앙조직은 1955년 문교부의 「문화보존과」에서 문화재 관리업무를 관장하였으며, 지방조직은 각 시·도교육위원회가 담당하였다.

당시에는 자체적 법규가 제정되지 않아 1933년 일제가 조선총독부령으로 제정한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기전 1961년까지 29년동안 계속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때를 문화재관리 행정의 시작이라 보기는 어려우며 굳이 말하자면 문화재관리 행정의 ‘혼돈기’라고 볼 수 있다.

이후 1961년 문화재관리 행정기구로서 「문화재관리국」이 문교부 외국으로 설치되

고, 1962년 문화재보호법(법률 제962호)이 제정됨에 따라 비로소 체계적인 문화재관리 행정의 기틀이 마련되었으며, 이 시기가 본격적인 문화재관리 행정의 ‘기본조성기’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일제가 지정한 보물을 국보와 보물로, 고적을 사적으로 문화재의 명칭을 변경하여 재지정하고, 동·식물·동굴 등을 천연기념물로, 종묘제례악 등 기·예능종목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였으며, 중요민속자료도 새로 지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하여 1970년대 ‘발전기’, 1980년대 ‘안정기’를 거쳐 1990년대에 우리문화재의 세계화사업과 역사 바로세우기에 발맞추어 비로소 ‘도약기’라 볼 수 있는 오늘에 이르렀다.

다소 늦은감은 있지만 1997년을 ‘문화유산의 해’로 선정하여 민족문화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는 사업을 전국적으로 전개하는 등 문화재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인식을 높이고 있는 것은 매우 다행한 일이며, 세계화와 지방화시대가 전개되면서 행정환경이 급변하는 이때, 문화재행정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발전방안에 대해 고찰해 보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II. 문화재 행정환경의 변화

문화재 행정의 개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문화재를 둘러싼 주변여건 즉, 행정환경의 변화를 먼저 파악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대응이 따라야 할 것이다.

한마디로 오늘날의 문화재보호환경은 과거와는 크게 달라져 현재의 조직과 예산체계 및 제도적 여건으로는 효율적인 문화재보호·관리를 하기 어려운 전환점에 도달하였다.

문화재 행정을 둘러싼 주변환경의 변화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알아보면 첫째, 과거와 대비해서 관리대상 지정문화재가 양적으로 증가하였다. 1997.10월말 현재 국가지정문화재가 2,578건, 시·도지정문화재가 3,158건, 문화재자료가 1,454건, 전통건축물이 21건 등 총 7,211건으로 1962년 지정당시에 비해 14배이상 증가하였다. 이중 무형문화재는 1964년 중요무형문화재 제1호로 종묘제례악을 지정한 이래 103종목이 지정되었고, 보유자 182명, 보유단체 51개가 인정되어 있다.

둘째, 개발사업의 급증에 따른 문화재 훼손심화 및 지역이기주의 팽배를 들 수 있다. 문화유적과 주변환경이 산업화에 따른 도로·항만·공단·택지조성 등 각종개발사업으로 인하여 크게 훼손 및 멸실되어가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경제발전위주의 지역이기주의가 팽배해 있고, 지역주민들의 사유재산권 확보와 보상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은 문화재보존과 개발이 상충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 국민문화수준의 향상 및 문화향수의 욕구증대이다. 선진복지국가 진입에 따른 국민의 문화향수 욕구증대로 문화유산의 관광자원화를 추구하고, 쾌적한 환경 및 레저 등을 위한 휴식공간을 요구하고 있어 국민들의 문화수준은 현재의 문화재보호·활용수준을 앞서가고 있다.

넷째, 세계화·정보화시대의 급속한 변화로 인하여 국가간 문화교류가 확대되어가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도 UNESCO의 국제적 문화재보존정책에 적극 동참함에 따라 전통 문화의 세계화·정보화를 위한 전략적 대책이 새롭게 요구되고 있다.

끝으로, 남·북한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합리적인 문화재관리정책을 준비하여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이에 따라 관련법규를 정비하고 문화재관리 행정기구를 보강하며 전문인력 확보와 문화재보존·관리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Ⅲ. 문화재 행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재관리 행정은 ‘문화재의 효율적인 보존·관리 및 전승과 활용’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제반작용’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조직과 예산이 투입되고 많은 정책들이 추진되고 있다. 문화재행정을 조직·예산·정책 등 3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알아보기로 한다.

1. 문화재 조직

1) 문화재관리 조직 현황

현재 문화재관리의 실태를 살펴보면, 문화재의 지정·발굴조사·보수정비·현상변경 등 모든 문화재관리 행정에 관한 총괄은 문화재관리국에서 하고 있으며 전국에 산재한 고분군·왕릉 등 사적지의 상당부분이 국·공유이나, 이에 대한 관리는 주로 문화재관리단체로 지정된 시·군·구가 관리하고 있다. 또한, 문화재관리 행정은 문화재소유자와 시·군·구 및 시·도 그리고 문화재관리국간에 이루어지고 있으나 문화재 보수정비와 경상관리 등 일선행정은 시·군·구에서 전담하고 있다.

우선 문화재관리국 조직을 보면 정부조직법 제35조의2에 의하여 문화체육부 외국(外局)으로 되어 있고, 2급국장·1기획관·7과·1연구소(3지방연구소)·2전시관·4궁·13능원관리소를 두고 정원은 578명(본국 180, 연구소 95, 궁·능사무소 303)이다. 지방문화재 관리조직은 시·도의 경우 문화예술과·문화체육과·문화정책과·문화재과(서울)에 문화재계를 두고 있으며, 대개 5급 계장 1명에 직원 3~8명을 두고 있다. 시·군·구의 경우에는 문화관광과·문화공보담당관실·문화공보실에 문화재계·문화관광계 등을 설치하여 6급계장 1명에 직원 1~2명을 두고 있는 실정이며, 그 현황은 표 1과 같다.

<表 1>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관리 기구 현황

<시·군·구 문화재관리기구> (’97.8월 현재)

시·도별	구			시			군(출장소)			합 계		
	문화재계	기타	계	문화재계	기타	계	문화재계	기타	계	문화재계	기타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계	1	24	25							1	24	25
	1	14	15					1	1	1	15	16
		7	7					1	1		8	8
		8	8				1	1	2	1	9	10
		5	5								5	5
		5	5								5	5
		4	4					1	1		5	5
	2	67	69				1	4	5	3	71	74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계				1	21	21		10	10		31	31
				1	6	7		11	11	1	17	18
				2	1	3		9	9	2	10	12
				1	5	6	1	9	10	2	14	16
				2	4	6		8	8	2	12	14
				3	3	6	2	16	18	5	19	24
				3	7	10		13	13	3	20	23
				4	6	10	1	9	9	5	15	20
			1	1	2		2	2	1	3	4	
			17	54	71	4	87	91	21	141	162	
총계	2	67	69	17	54	71	5	91	96	24	212	236

<학예연구직 및 별정직 현황>

단위: 명 (’97.8월 현재)

시·도별	본 청	구	시	군	계	시·도별	본 청	구	시	군	계
서울	1				1	경기	3		1		4
부산	1	1			2	강원	1		8	11	20
대구	1				1	충북	2		1		3
인천	1				1	충남	2		7	8	17
광주	2				2	전북	3		3	1	7
대전	1				1	전남	2		2	1	5
울산	1				1	경북	3		5	2	10
						경남	3		1	3	7
						제주	2				2
계	8	1			9	계	21		28	26	75
						총계	29	1	28	26	84

2) 문제점

우리나라의 문화재관리는 1961년 문화재관리국의 발족과 더불어 정상적인 체제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문화재의 중요성에 비해 정부정책의 우선 순위에서 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재관리국은 발족당시의 2급국장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기관장을 하고 있으며, 정부유일의외국으로 남아 있다. 또한, 현재의 조직으로는 개발과 보존의 상충으로 계속 증가하는 문화재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에는 한계점에 도달하였고, 문화재행정은 지방자치단체 업무와 직결되므로 기관장간의 대등한 위상정립이 필요하나 그렇지 못한 실정이며, 향후 통일에 대비한 주도적인 문화재 관리역량 축적을 위해서도 이제는 문화재관리조직의 개편이 불가피한 시점에 와 있다.

그리고 문화재의 실무관리단체인 지방조직은 시·군·군·구 대부분이 독립된 「문화재과」는 물론 「문화재계」조차 두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개발사업에만 치중하는 등 문화재관리는 소외되는 경향이 있다. 표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시·도 및 시·군·구에는 학예연구직·별정직 등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전문적인 분야는 문화재관리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일반행정·기술직공무원은 문화재의 전문성·특수성 등 관련지식 및 경험이 부족한 반면 업무량의 지속적인 증가와 비인기부서 등의 사유로 문화재 담당부서 근무를 기피하고 있다. 따라서 문화재관리의 실질적인 일선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시·군·구의 현재 조직 및 인력으로는 귀중한 민족문화유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3) 개선방안

문화재 중앙조직인 문화재관리국은 「청」으로 승격되어야 한다. 그 필요성을 살펴보면 첫째, 전통문화의 보존 및 계승발전에 대한 문화정책의지의 반영이다. 21세기 문화국가로 지향하는 사회문화적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관

광·문화산업을 발전·심화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경제·사회개발에 따른 문화관리정책의 총괄청으로서의 위상 확보 및 기능강화를 들 수 있다. 각 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 등의 개발사업 증가에 대한 적극적인 문화재보존대책 강구가 필요하며, 사유재산권 행사와 문화재보존간의 마찰을 최소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98년 대전 제3청사로의 이전을 계기로 문화재관리국 조직개편·확충의 필요성 대두이다. 1961년 문화재관리국 발족이후 36년간 외국으로 존치되어 있으며,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이전 대상 8개 청과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나, 명목상 중앙행정기관일 뿐이고 실제적으로는 문화체육부 내국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문화재관리국의 방대한 관리대상 문화재와 예산의 증가에 비해 기구 및 정원의 부족을 들 수 있다. 지정문화재는 503건에서 7,211건으로 14배이상 증가하였고 예산규모도 크게 확대 되었으나, 정원은 252명에서 585명으로 2.4배 증원에 불과하다.

넷째, 문화재의 과학적 보존처리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확보가 절실하다.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문화재관리 분야에도 첨단 과학기자재 및 컴퓨터 등 전문기술 개발과 인력을 양성해야 할 것이며, 발굴의 급증에 따른 매장문화재 보존처리 수요가 증가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다섯째, 통일에 대비한 문화재 보존관리 능력 제고를 위하여 북한소재 문화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섯째, 우리 문화의 세계화를 위한 문화재 교류 업무의 강화를 들 수 있다. 석굴암·종묘 등 우리 문화재의 세계유산등록으로 국제적 관심이 제고되어 있어 유네스코 및 국제협약국과의 문화재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화재관리 행정의 전문성과 일관성 확보유지이다. 문화재관리 총괄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기능이 강화되어야 하며, 학계·문화재위원·언론 및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하여 이에 걸맞는 위상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문화재 관리조직의 경우에는 현재 광역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문화재계」를 「문화재과」로 승격시켜 4급 과장 1인과 2~3계로 구성하고 직원은 현 정원의 2배이상으로 하되, 학예연구직·문화재전문직·별정직 및 기술직공무원 등 전문인력 보강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시·군·구는 「문화재계」를 설치하여 계장 1인에 직원은 최소한 2~4명은 두어야 할 것이며 특히, 지정문화재나 문화유적지가 많은 시·군에는 「문화재과」를 설치토록 하여 최소한 5급과장 1인에 7~9명 정도의 직원으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2. 문화재 예산

1) 문화재관리 예산 현황

문화재관리 예산은 회계구분에 있어서 문화재관리국이 설치된 이후 1968년까지는 문

화재관리특별회계로 편성·운영되었으나, 1969~1976년기간에는 문화재관리특별회계와 경제개발특별회계로 나누어 편성되었고, 1977~1988년까지는 일반회계와 문화재관리특별회계로 이원적 편성·운영되다가, 1988.12.31. 문화재관리특별회계가 폐지됨에 따라 1989년도부터 일반회계로 일원화되어 편성·운영되고 있다.(표2 참조)

예산총액 기준으로 보면, 문화재관리예산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1962년에 1억정도 이던 문화재관리예산이 1969년에는 15억, 1977년에는 51억, 1989년에는 351억, 1996년 911억, 1997년에는 1,243억으로 크게 늘어났다.

또한 최근들어 문화재관리 예산의 증가율도 매년 크게 증가하여 1994년 전년대비 13.0%증가에서 1995년에는 19.5%, 1996년에는 24.1%로 그리고 1997년에는 36.4%로 높아졌다.

(표3 참조)

아울러 최근 5년간(1993~1997) 정부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15.0%인데 비해 문화재관리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25.8%로 문화재관리예산의 증가율이 정부예산 증가율을 상회하고 있다.

<表 2>

문화재관리예산 추이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일반회계	경제개발특별회계	문화재관리특별회계	계
1962	-	-	132	132
1965	-	-	342	342
1969	-	334	1,226	1,560
1973	-	1,096	1,966	3,062
1977	2,761	-	2,341	5,102
1982	9,251	-	5,121	14,372
1989	35,098	-	-	35,098
	(예비비 824포함)			
1992	50,754	-	-	50,754
1996	91,146	-	-	91,146
	(수입대체초과 248포함)			
1997	124,285	-	-	124,285

<表3>

문화재관리예산 증가율 추이

(단위 : 억원)

연도별	정부예산	증가율	문화재관리예산	
				증가율
1993	407,645	-	542	-
1994	476,262	16.8%	614	13.3%
1995	567,173	19.1%	734	19.5%
1996	629,626	11.0%	911	24.1%
1997	714,006	13.4%	1,243	36.4%

2) 문제점

문화재관리 예산편성상의 문제점은 첫째, 정부예산대비 문화재관리예산의 비중저하를 들수 있다. 문화재관리예산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정부예산 대비 문화재관리예산의 비중은 매년 크게 감소하였다.(표4 참조)

1969년 정부예산대비 문화재관리예산의 비중이 0.48%이었던 것이 1979년에는 0.22%, 1988년에는 0.17%, 1995년에는 0.13% 수준으로 계속 줄어들다가 1996년에 0.14%, 1997년에는 0.17%로 그 비중이 약간 증가하고는 있으나, 1960년대 1970년대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表4>

정부예산대비 문화재 관리예산

(단위 : 억원)

연도	정부예산(A)	문화재관리예산(B)	비율(B/A)
1962	732	1.3	0.18
1969	3,265	15.6	1.48
1978	35,170	102.2	0.29
1979	52,134	116	0.22
1988	180,250	313	0.17
1991	313,823	428	0.14
1995	567,173	734	0.13
1996	629,626	911	0.14
1997	714,006	1,243	0.17

둘째, 보조예산에 편성한 편성으로 보조사업예산의 비율이 1994년에 47% 수준이던 것이 1996년에는 54%, 1997년에는 57% 수준으로 그 정도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반면 경상비 성격의 예산 비중은 더욱 낮아졌다.(표5 참조)

<表5>

문화재 관리예산의 구성 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	'94 (구성비)	'95 (구성비)	'96 (구성비)	'97 (구성비)
계	61,371 (100%)	73,394 (100%)	91,146 (100%)	124,285 (100%)
○ 기본적경비	10,397 (17%)	11,763 (16%)	14,544 (16%)	16,183 (13%)
○ 직영사업	22,303 (36%)	26,416 (36%)	27,277 (30%)	36,891 (30%)
○ 보조사업	28,671 (47%)	35,215 (48%)	49,325 (54%)	71,211 (57%)
-자치단체자본보조	28,334	34,776	48,826	70,597
-자치단체경상보조	263	365	448	564
-민간경상보조	74	74	50	50

셋째, 문화재 보수예산 편성상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문화재 보수정비의 경우 별표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역사상·학술상 또는 지정학상으로 공통적인 문화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대표적 권역을 문화권으로 묶어 주요유적을 선정하여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하고 있으나 권역외 소재 문화재의 경우에는 단위문화재별로 시·도신청에 의하여 문화재 보수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表6>

문화권별 종합정비 현황

구 분	기 간	대상문화권
제1차	1988~1997	백제·가야·신라·중원·영산강유역문화권
제2차	1998~2000	백제·가야·신라·중원·다도해·안동영주·강화문화권

따라서 매년 보수가 시급한 500건 내지 600건의 문화재를 정비하고 있으나, 문화재별로 종합적인 보수·정비계획없이 매년 시·도신청→실태조사→예산편성의 과정을 되풀이하고 있어 행정낭비 등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또한 정치적 고려·정실에 의한 배려 등 일부 불합리한 예산편성 여지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3) 개선방안

문화재관리 예산편성에 있어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본다면 첫째, 문화재관리예산의 지속적 확충이다. 문화재관리예산이 매년 늘어나고 있고, 최근 5년간의 연평균 증가율(25.8%)도 정부예산의 평균 증가율(15.0%)을 상회하고 있으나, 정부예산 대비 문화재관리 예산의 비중은 아직도 낮은 실정(1969 : 0.48%, 1997 : 0.17%)이므로 문화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는 정부예산과 대비하여 충분한 재원확보가 필요하다.

둘째, 경상사업비 증대를 통한 문화재 관리행정의 다각화 도모이다. 문화재관리 예산은 구조적으로 보조사업 위주로 편성('97년의 경우 문화재관리 예산의 57% 수준)되어 있어 경상사업비적 성격의 예산이 절대 부족하므로 향후 이의 확보를 통하여 문화재 보

수·정비사업외에 보급선양사업 등 국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사업의 추진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문화재관리 및 보호를 목적으로 1985년에 도입·운영중인 문화재명예관리인 제도는 그동안 이들에 대한 교육과 별도의 혜택이 없어 활동이 미미한 상태이나 이를 활성화하여 자기 고장의 문화재를 적극 감시하고 홍보활동을 자발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명예관리인에게 최소한의 경비를 지급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문화재 보수예산 편성의 합리화를 들 수 있다. 문화재 보수·정비는 가능한한 문화권 정비사업 위주로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토록 하되, 단위문화재의 보수·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단위문화재 보수·정비는 시·도신청에 기초하여 추진되어 왔으나 향후에는 문화재별로 보수·정비계획을 보수·정비 대상사업을 예측가능하도록 하고, 아울러 보수·정비 대상사업의 우선 순위에 대하여도 기본 원칙을 명문화하여 문화재 보수·정비 예산편성과 관련한 행정·예산상의 낭비요소 등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3. 문화재 정책

1) 매장문화재 보호

매장문화재는 급속한 개발과 가장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문화재로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보호문제는 중대한 현안 사항으로 부각되고 있다.

유구한 역사를 지닌 우리나라는 수많은 역사의 발자취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으며, 선인의 역사적·문화적 체취를 느낄 수 있는 문화유적들이 전국에 산재하여 매장되어 있다.

이러한 매장문화재는 관련기관·단체 및 국민들의 매장문화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각종 건설공사로 인하여 매장문화재의 훼손 및 멸실이 심화되고 있으며, 또한 경제 성장에 따른 개발사업의 증가로 매장문화재 발굴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매장문화재는 지하 및 해저에 묻혀있는 문화재라는 특성상, 그 개념이 모호하고 이를 보호·관리하는 일 또한 쉽지 않다. 매장문화재를 보호·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 분포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 할 것이나, 지하에 매장된 유적을 발견하고 그 성격을 파악하는 것은 지속적인 노력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과제이다. 이러한 매장문화재의 보호·관리와 관련된 주요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매장문화재의 정확한 분포현황의 파악이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각종 문화재의 위치와 범위를 파악하고 이를 알리는 일은 각종 개발로 인한 문화재의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주요한 사업이다. 그러나 전국에 산재해 있는 모든 매장문화재를 단시일 내에 파악할 수 없으므로, 이는 지속적이고 꾸준한 조사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다.

또한 전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지표조사에는 그 방법상 매장문화재의 발견에 한계가 있어, 일정 범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정밀조사가 매장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라 하겠다.

따라서, 문화재관리국에서는 전국의 문화재를 조사·정리하기 위해 1995년부터 「전국 문화유적총람」 CD롬을 지역별로 제작·발간하고 있으며, 유적의 분포 및 현황을 표시한 「전국문화유적총람」을 제작·발간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개발공사는 사전지표조사를 의무화하도록 법제화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발굴제도와 관련된 제반 문제점이다. 문헌자료나 지표조사를 통하여 발견된 매장문화재는 보존·관리되어야 할 것이나, 경제개발에 따른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및 지방화 시대의 각종 공단·택지조성의 개발을 위하여는 불가피하게 유적을 발굴조사하고 공사를 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급속한 개발수요에 따른 발굴 수요의 폭증은 우리나라 발굴 전문인력 및 기관의 부족현상을 초래하고, 그에 따른 발굴 수요의 폭증은 우리나라 발굴 전문인력 및 기관의 부족현상을 초래하고, 그에 따른 발굴의 적시성 및 효율성을 제고해야 하는 문제들을 수반하게 되었다. 발굴을 전문으로하는 기관의 바람직한 형태, 발굴인력의 양성 및 교육, 발굴용역에 대한 객관화·표준화 문제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것이다.

문화재관리국에서는 이러한 발굴 등 매장문화재 관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학술연구를 통한 개선안을 모색하고, 학계·개발관련기관·일선행정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각종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에 따른 매장문화재 보호·관리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가시적인 방안들이 제시되었고, 이를 제도정비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셋째, 발견 또는 발굴된 유적과 유물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문제이다. 발굴 수요가 급증하면서 출토되는 유물 또한 상당량에 이른다. 유물은 과학적 보존처리를 거친후 박물관 등에 보관·관리하게 되는데, 현재 유물 보존처리를 할 인력 및 기관이 부족하고 유물 수장시설이 일부 미비되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유물의 보관관리 및 보존처리를 수행할 전문인력의 확충과 설비의 증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밖에 발굴유적의 정비·복원, 발굴 허가제도상의 효율성 제고, 문화재관리국 및 문화재연구소의 위상제고 및 인력확충, 대학박물관의 발굴참여 및 유물관리 문제 등이 매장문화재의 보호·관리제도와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점들이다.

2) 무형문화재 보호

우리나라는 1945년 광복을 맞았으나 정치이념의 분열과 사회적 혼란으로 동일 민족이 분단되는 비극을 겪었다. 이러한 민족적 비극을 극복하기 위해 학계에서는 국학부흥운동이 일어났고, 정부에서도 국민의 정신적 복구를 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속에 전통문화에 바탕을 둔 국민통합을 위한 정신적 문화유산인 무형문화재를 포함하는 문화재보호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다. 무형문화재는 성격상 일정한 형체가 없이 전승되는 예능이거나 기능이기에 사람에 의해 실연될 때

에만 그 모습을 보거나 들을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1997. 10월 현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는 103종목이 지정되어 있으며, 소위 「인간문화재」라 불리우는 182명의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와 51개의 보유단체가 인정되어 있다. 보유자는 갖고 있는 기·예능을 보존하고 전승될 수 있도록 전승자들에게 전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수교육방법은 기·예능을 보존하고 전승될 수 있도록 전승자들에게 전수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수교육방법은 기·예능의 전통적 전수방법이었던 도제식 교육방법으로 보유자의 문하생으로서 전수받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무형문화재는 유형문화재와는 달리 무형이기 때문에 변형되거나 훼손되더라도 이를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음반·책자·영상매체 등을 통한 기록화 작업이 중대한 과제가 되었다. 또한 초기 지정 당시와는 달리 문화수준의 향상으로 전통예술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높은 인기종목과 대중적 관심을 얻지 못하는 비인기종목으로 양분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공예분야 보유자는 훌륭한 작품을 제작하여도 유통망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작품판매에 애로를 겪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첫째, 영상·음반물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실연하는 전과정을 기록·보존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지금까지 문화재관리국(문화재연구소)에서는 총 103종목 114건중 기록영화제작 67건, 음악종목의 음반물 15건을 제작하였고, 기록영화 48건(신규 32건, 내용미비 등 16건 재제작)은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제작할 계획이다.

둘째, 무형문화재를 지정관리함에 있어 심의기준으로 당해문화재의 역사성에 대해서는 근대이전의 전통문화예술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근대문화예술은 지정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향후 21C에는 근대문화예술에 대한 지정논의가 검토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속학·공예학·국악 등 관련학계에서도 근대 예술에 대한 연구 성과가 이루어져 이를 반영한 지정기준과 지정대상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천연기념물 보호

통상 문화재라 하면 인간이 만든 유·무형의 문화유산만을 문화재로 인식하고 자연물에 대해서는 정복의 대상 또는 이용의 대상으로만 인식함으로써 자연이 문화를 창출하고 발달시키는 근원이며, 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천연기념물은 이러한 자연물중 특히 보호할 만한 가치, 즉 문화적·학술적·자연사적 가치와 국민적 정서, 향토성 등의 제가치를 고려하여 선정된 자연물로서 자연의 대표적 상징물이라는 문화재적 의의를 지니고 있다.

천연기념물에 대한 본격적인 보호는 「문화재보호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시작되었고, 1962년 동법에 의해 최초로 98건의 천연기념물을 지정하였으며 1997년 10월 현재 286건의 천연기념물이 지정되어 문화재로서 보호를 받고 있다. 이러한 천연기념물은 각종 개발로 인한 환경악화로 천연기념물이 주변개발로 인해 전체 생태계와 고립되어 천연기념물뿐만 아니라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환경의 훼손이 가속화되어 가고 있다.

또한, 천연기념물은 대부분 특정한 소유자가 없으며 그로 인해 천연기념물은 개발의 목표가 되는 등 국민적 보호의식이 매우 미흡하며, 그 희귀성으로 인해 천연기념물의 임의적 불법포획 및 표본·박제의 불법유통이 심화되고 있으나, 이의 적발이 사실상 어렵고 천연기념물에 대한 기초자료 또한 부족하여 이를 인지하기가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는 첫째, 주민자치에 의한 관리지원이다. 즉, 천연기념물을 지정하는 목적중의 하나는 향토애를 고취시키는 것으로써 천연기념물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리경비를 국고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명예관리인과 명예관리단체를 지정하여 주민참여를 보다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둘째, 민간단체의 활성화 및 지원을 들 수 있다.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야생동물은 그 분포 및 서식등의 특성상 국가에 의한 직접관리는 어려우므로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보호뿐만 아니라 민간단체들의 활동이 절실하다고 보며 국가는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정부부처간 협조의 강화이다. 사라져가는 자연유산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정부부처내의 개발정책 수립과정에서 천연기념물 보존을 위한 조치들이 긍정적으로 검토되도록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각종 법령개정시 천연기념물 보존을 위한 조항들을 삽입하여 문화재보호법을 적용하기 이전에 개발과 관련된 법령에 의해 천연기념물을 보호토록 함으로써 국민 불편 해소 및 천연기념물 보호·관리 강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넷째, 국보·보물과 마찬가지로 천연기념물도 해외반출 및 수출을 금지하고 천연기념물(조수류) 표본·박제소유자의 현상 변경 허가 및 소유자 신고를 통하여 국내의 표본·박제에 대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밀렵행위 및 음성적 거래가 근절될 수 있도록 해야하며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천연기념물 관련 벌칙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지정된 천연기념물의 학술연구를 통한 동·식물등의 서식·생성환경을 규명하고 나아가 훼손·멸실되어가는 “종(種)”에 대한 복원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4) 사적관리

전국에 지정된 문화재중 가장 광범한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사적은 '97. 10월말 현재 궁지 9건, 성곽 73건, 고분·릉·묘 121건, 사지 27건, 개화기·독립유적 26건, 선사유적 12건, 패총 5건, 기타 112건 등 총 385건이 지정되어 있다.

이러한 사적은 전국에 광범위하게 산재해 있고 산간·오지에 위치한 것도 많아 관리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실정에 있어 실제 관리상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면 사적의 관리는 주로 지방조직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지방의 문화재 전담조직 및 기구가 열악하고,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가직접관리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보존·관리 의식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사지·산성·고분군 등 면적이 넓은 사적과 사유지내의 사적에 대해서는 재원의 부족으로 보수·정비되지 않은 문화재가 다수 상존해 있으며, 주요도로·진입로 등

관람동선의 안내표시 부족 및 문화재지역 경계 표석의 미설치등으로 관람객을 위한 안내시설이 부족하고, 기타 관리인원의 부족으로 인한 순찰·청소 및 경상적인 보수·정비 미흡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문화재관리국에서는 '97년 8월~9월 문화재 총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이를 토대로 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문화재 보존·관리 실명제 도입을 들 수 있다. 이 실명제는 문화재안내판에 정·부관리책임자(정 : 시·군·구 담당자, 부 : 현장관리자)를 표기하고 전화번호와 연락처를 명시하는 것으로 문화재관계자의 책임감을 고취하고, 국민참여적 문화재관리체제의 제도화를 통하여 국민들의 문화재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자는 취지로써 문화재관리국에서는 안내판이 있는 모든 문화재(5,533건)를 대상으로 시행토록 하였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에 대한 관리권한 및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다. 즉, 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등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문화재에 대한 관리방법을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효율적인 문화재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한 의문 강화등으로 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행정상 공백을 제거하고 문화재보존·관리의식을 제고토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역사적·경관적 가치와 국민의 관람선호도가 높은 문화재를 집중 보수·정비하고, 현실적으로 유지관리가 어렵고 관람선호도가 낮은 문화재는 연차적으로 정비하는 등 단위문화별 보존·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문화재보존에 대한 경상관리 체제개선을 들 수 있다. 이를 위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적관리인원의 확충 및 경상경비를 지원토록 하고, 명예관리인을 통한 민간차원의 문화재 애호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명예관리인에 관리수당 지급과 교육활동을 강화하는 방안들이 적극 강구되어야 하겠다.

5) 문화재사범 근절

문화재는 희소성·환금성·재산증식의 수단 등으로 문화재 소유욕구가 증대하고 있어 문화재소유 수요에 따른 도굴·도난·밀매 사건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문화재사범의 유형은 문화재 도굴·절취·손상·은닉 및 불법국외반출 등으로 도굴의 경우는 유적 파괴를, 국외반출·절취의 경우에는 민족문화 말살을 초래하는 반민족적 범죄임에도, 최근 5개년간('92~'96)의 통계를 보면 문화재사범 발생건수 110건중 도난사건 91건(83%), 도굴사건 19건(17%)이며, 문화재 도굴사건에 비해 도난사건이 상대적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에 반해 5개년간('92~'96) 도난문화재 회수건수는 전체 도난·도굴 발생건수 110건중 22건으로 20%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러한 문화재사범 단속에 대한 문제점은 첫째, 수사전담인력 및 수사력 부족(문화재관리국, 시·도)을 들 수 있다. 문화재관리국 사범단속 요원은 2명(사범경찰관 1명)으로 전국의 문화재사범을 단속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시·도 및 시·군·구의 경우에도 문화재 담당직원의 평균 근무연한이 1년미만으로 행정 및 수사와 관련한 전문성이 부족하고, 시·군·구단위의 전문절취범·도굴꾼 등에 대한 동태파악 및 수사전담인력이 확보

되어 있지 않다.

둘째, 검·경찰의 수사전담기구 및 인력부족이다. 중앙단위 수사전문기관(대검·경찰청)내 전담부서 미설치로 수사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어 중요문화재 사범에 대한 전국 검·경찰조직망과 상호 연계수사가 어려우며, 지방경찰청·지방검찰청단위에서의 문화재사범 전담기구 및 인력 배치가 전무한 실정에 있다.

셋째, 법정 형량제의 미정착이다. 실제 문화재사범에 대한 제재는 법정형량보다 검사의 실제구형량이 상대적으로 관대한 편이며, 선고형량 또한 대부분 벌금 또는 집행유예(징역형은 13.5%에 불과)로 석방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표7 참조)

<表7>

문화재사범 선고형량

(’91~’95통계임)

구 분	벌금형	집행유예	징역형					계
			1년이하	1년6월~2년	2년6월	3년~4년	5년	
인원(명)	622	561	120	41	10	7	4	1,365
비율(%)	(45.5%)	(41%)	(8.8%)	(3%)	(0.8%)	(0.5%)	(0.3%)	(100%)

이에 대한 개선대책으로는 첫째, 검·경찰당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범정부적 참여하에 문화재사범단속을 추진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하고, 고질적인 누범자를 중심으로 집중 탐문수사 실시 등을 통한 문화재사범 일소의 실질적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문화재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문화재매매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문화재의 소유자·관리자·관리단체 등에 문화재보호 및 관심제고를 통한 대국민홍보를 강화하여 수요측면에서 문화재사범 발생소지의 예방에도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것이다.

셋째, 문화재사범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법정형량을 준수토록 관계기관의 인식제고와 언론매체 활용등으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문화재사범 합동단속반의 설치 운영 및 일제단속을 실시하는 방안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문화재관리국의 문화재사범 단속반 보강 및 검·경찰의 전담기구·인력을 확보하고 실제 판결례가 집행유예 및 벌금형이 많은 것을 감안하여 벌금형을 대폭 강화하는 것도 일방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6) 민속자료 관리

문화재보호법상 민속자료는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관습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가구·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을 말하나, 행정 실무에서는 전통건조물보존법에 의한 전통건조물과 그 보존지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민속자료는 1964년부터 지정되기 시작하였고, 거의 매년 5점이하의 소수 문화재를 지

정하였으나 1979년(73점), 1984년(87점)에 특히 많은 문화재를 발굴하였다. 1997년 10월말 현재 지정현황을 보면, 중요민속자료 228점(민속가옥 135점, 민속마을 3점, 동산등 기타 90점), 시·도민속자료 267점, 전통건조물 21점, 전통건조물보존지구 2점 등이 지정되어 있다.

이러한 민속자료중 민속가옥 및 민속마을은 다른 문화재와는 달리 주민이 거주하며 생활하는 공간으로서 생활편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내부 현상변경이 다소 용이하게 이루어고 있으며, 유사한 민속가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중요민속자료와 전통건조물보존법에 의한 전통건조물로 이원화되었다. 이로 인하여 전통건조물은 국가지정문화재임에도 불구하고 중요민속자료에 비하여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고 예산 지원에 있어서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전통건조물보존법에 의한 전통건조물 지정은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민속자료와 유사·중첩되는 부분이 많아 더 이상의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법의 효용성이 사라져가고 있는 실정이며, 민속마을은 주민의 실제 생활공간으로서 문화재의 선양을 위한 공개의 어려움이 있으며 관람료와 관련하여 관람객의 불편을 사고 있고, 문화재보존을 위한 여러 법적규제로 인하여 주민들은 생활상·재산상 불이익을 받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산재해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문화재의 원형보존과 주민생활 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즉, 양자가 모두 조화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효용성이 사라져가고 있는 전통 건조물보존법을 폐지하고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로 편입함으로써 전통 건조물의 가치를 제고하고 예산지원의 형평성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7) 궁·능 관리

궁·능원은 일제 강점기에 일인에 의한 의도적인 변형과 6·25를 거치면서 많은 문화재가 파괴되고 훼손되어 왔으며, 전문인력 및 국가 재정의 부족으로 문화재에 대한 복원과 보존관리에 소홀함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5·16 군사정권이후 문화재관리 정책은 그동안 가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경제발전을 최우선으로 삼아온 사회적 분위기로 말미암아 다른 분야에 비해 낙후되어 왔으며, 1970년대에는 5개능력(화성 읍건릉, 김포 장릉, 파주 공순영릉, 파주 장릉, 소령·유길원)을 지방 시·군에 위임관리한 바 있으나, 관리부실로 1973년에 이의 관리를 문화재관리국으로 환원한 바 있다.

그러나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일제에 의하여 동·식물원과 유기시설로 격하된 창경원을 정비하여 비로소 원래의 창경궁으로 제모습을 되찾았으며 90년대에는 일제의 민족정기 말살정책으로 파괴된 경복궁 복원을 시작하게 되었다.

따라서, 21세기 문화선진국 진입을 앞두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는 정책의 일환으로 일제강점기에 의도적으로 훼손된 경복궁과 창덕궁을 복원하고 5대궁의 특성을 살피 관리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경복궁은 조선시대 정궁으로서 궁제의 참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궁제를 복원하고,

창덕궁은 궁궐 전통조경이 잘 보존된 궁으로서 원유를 복구하여 세계적인 명원으로 보존토록 하며, 창경궁은 우리나라 최초의 식물원이 개원된 특징을 살려 전통식물 자연학습장으로, 또한 종묘는 신궁으로서 보다 정숙한 관람분위기를 조성하고, 덕수궁은 조선시대 말기 궁궐로서 궁중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궁중유물전시와 궁중문화행사를 재현하여 이를 특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능원은 능제의 복원과 훼손된 자연경관을 원래대로 복구하고 국민의 정서 생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국민역사교육현장으로서의 문화사적공간으로 조성하여, 조선왕조가 단절된 이후 볼 수 없었던 산릉제례의식의 원형을 재현하고 고궁에는 조선왕실의 전통문화행사를 재현하여 내·외국인에게 우리 문화의 독창성과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한국적인 행사를 고궁과 능원에서 정례화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함은 물론 관광상품의 개발로 우리문화를 세계에 널리 알리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내용에 주안점을 두고 궁·능원의 자연 환경을 전통수목과 자생초화류를 단계적으로 식재하여 본래의 궁·능원 조경과 생태계를 복원하고 자생식물에 대한 산교육현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궁·능원의 전통수목자연학습장을 조성하며, 궁·능원의 고건물 및 시설물 보수에 필요한 인력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며 보수가 필요한 곳에 신속하고 적기에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소규모 공사를 대체함으로써 예산절감의 효과도 거양할 수 있도록 직영보수단을 운영을 확충해야 한다.

8) 문화재 기록유지

문화재의 보존은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종합 보존관리를 요한다. 이러한 종합 보존관리를 위해서는 문화재의 과거와 현재를 알고 이에 따른 향후 조치계획이 수립·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즉, 단위별 문화재의 현황·보수내역·현상변경 등 모든 사항이 명확히 기록·정리·유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문화재보호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문화재대장·문화재관리상황카드·발굴조사현황자료 등은 물론 이의 부속자료인 사진·실측도·지적도·배치도 등도 기록정리를 철저히 하여 문화재 보존·관리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

더욱이, 현대 정보화사회에 부응하고 동 자료를 영구히 보존하여 후세에 물려 주기 위해서는 이를 전산화하는 작업도 게을리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문화재관리국에서는 그동안 각종 대장 등의 정리가 다소 미비된 부분을 일제히 정리하고, 전국의 지정문화재에 대한 멀티미디어 정보를 데이터 베이스(D/B)로 구축하여 인터넷(www.ocp.go.kr)을 통한 문화재정보를 서비스하고 있다. 또한 3만8천여건의 문화재 설계도면중 3천여건의 설계도면을 전산화하였고 미입력된 설계도면에 대해서도 전산화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낱알이 훼손되어 가는 문화재의 보존처리 및 보수관련 정보 D/B를 구축하여 시물레이션을 활용한 훼손문화재의 원형복원 사업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적도를 통한 문화재지정 및 보호구역 GIS(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문화재관리대장 등을 디지털화하는 사업도 추진하여야 한다.

IV. 맺 음 말

이상과 같이 문화재관리 행정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조직·예산·정책의 3가지 측면에서 알아보았는데, 문화재의 보존·관리는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평시에 철저한 점검과 관리를 통하여 수시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신속하고 적절하게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문화재의 보호는 정부만 나서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관련기관·단체 및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문화재 애호에 대한 의식이 제고되어야 하며, 「'97문화유산의 해」를 새로운 계기로 삼아 문화유산 알고·찾고·가꾸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세계화·국제화·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우리 문화재 정책도 국내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세계로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문화재 관련 UNESCO 국제협약과 국제기구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한국의 위상을 정립하고, 문화재보존을 위한 전문지식 및 기술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교환하는 등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문화유산에 대한 국제적 홍보와 관심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